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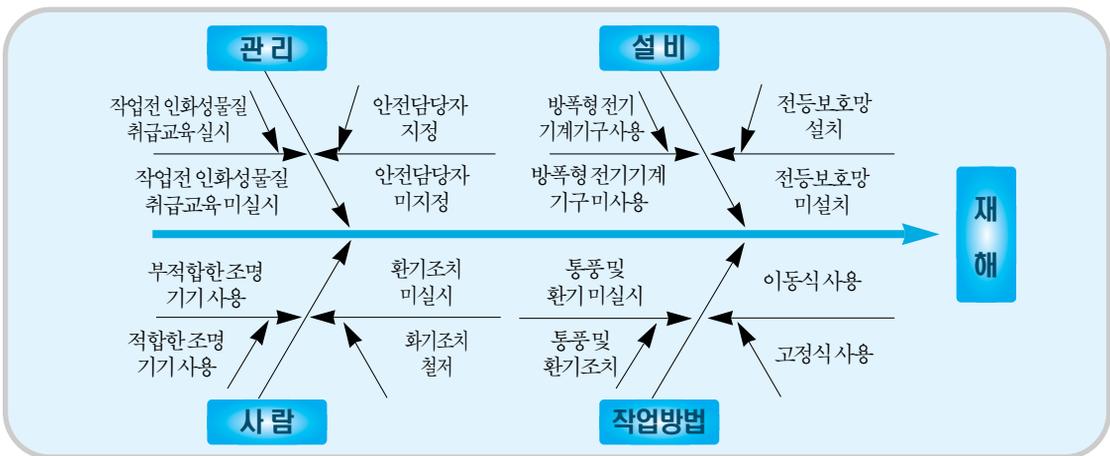
2003년 1월 ○일 21:30분경 강원도 원주시 ○○ 종합건설(주)에서 실내 장식용 무늬목 필름 시공작업에서 백열전등 조명을 들고 이동하던 중 전기스파크 발생으로 접착제 희석액에 인화되어 화상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부적합한 조명전기기계기구사용
- 나. 조명 설치 불량
- 다. 화재환경 분위기 조성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적합한 조명전기기계기구 사용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방폭성을 갖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함.

나. 통로 조명 확보

야간에 통행을 하는 복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조명등을 임시로 고정·설치하여 통로의 조명을 유지하여야 함.

다. 인화성물질 사용시 환기철저

신나 등과 같이 인화성이 강한 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은 창문 등을 모두 개방하거나 필요시 환풍기를 사용하는 등 환기를 철저히 하여 화재·폭발위험을 배제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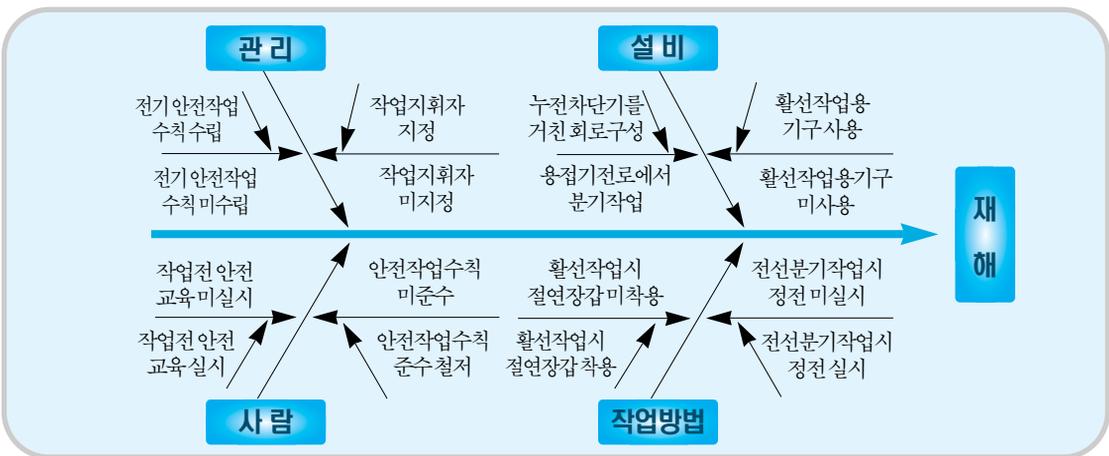
2003년 1월 ○일 13:40분경 경기도 용인시 (주)○○ 엔지니어링 초등학교 옹벽공사현장에서 사면하부 옹벽공사를 위하여 교류아이크 용접기 전로에서 휴대용 드릴기 전로를 분기작업 중 전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작업방법 불량
- 나.정전작업 미실시
- 다.절연보호구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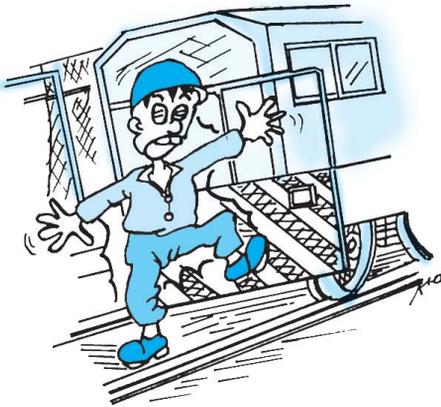
- 가. 작업방법개선.
드릴작업을 위한 회로는 임시 동력발전기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거친 후 회로를 구성하여야함.
- 나. 정전작업 실시
통전상황에서 전선을 분리작업 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실시하여야함.
- 다. 절연보호구 착용
전로 분리작업 등 저압(220V) 활선 작업시 절연보호구(절연장갑)를 착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해야함.
- 라. 감전 재해관련 안전교육 실시
감전사고는 저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통계와 같이 너무 쉽게 전기를 취급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므로 안전교육을 작업시작전에 실시해야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월 01:20분경 인천시 부평구 철도청 ○○시설관리사무소 선로유지보수 작업장에서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동료직원과 함께 자갈을 실은 화차에 탑승하여 작업장소 이동 중 피재자가 옆 선로로 내려 통과중이던 화물열차에 충돌사망한 재해임.



2

- 가. 안전통로 미확보.
- 나. 불안정한 행동
- 다. 작업지휘자 선임

3. 재해 요인도

4. 동증재해예방대책

가. 안전통로 확보 철저

선로주변에서 작업 및 이동시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확보 후 작업 진행.

나. 관리감독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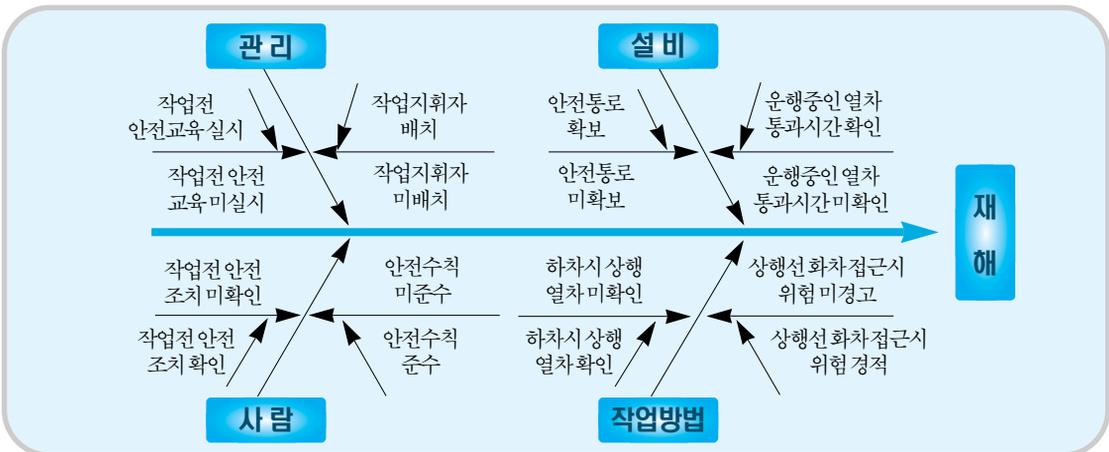
선로 보수작업 등의 열차 선로에서의 작업시 운행 중인 열차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 철저.

다. 작업지휘자 선임운영

선로 보수작업 등 주변환경이 수시로 위험해질 경우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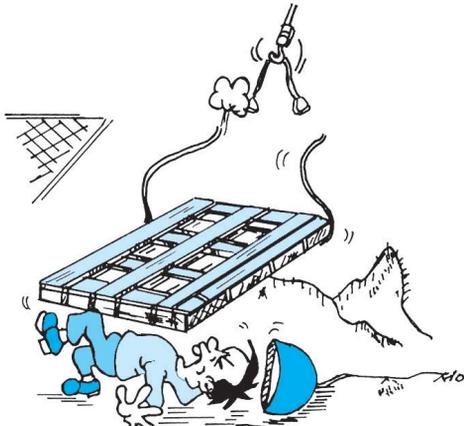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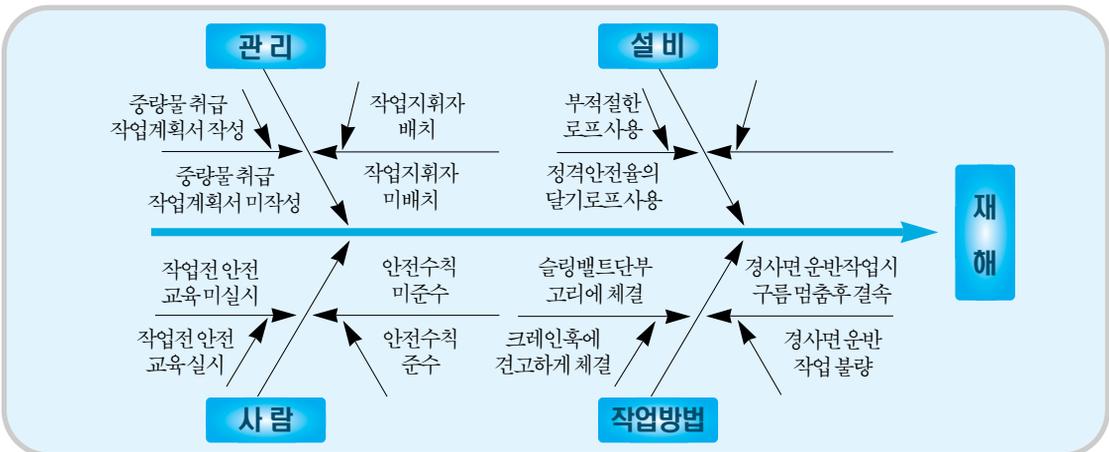
2003년 1월 ○일 13:30분경 강원도 화천군 소재 (주)○○토건 연립주택공사현장에서 기와를 적재하였던 철판레트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던 중 슬링벨트에 걸었던 보조로프가 풀리면서 지상에서 신호중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작업방법 불량.
- 나.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작성
- 다.위험지역에 접근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올바른 인양방법 사용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율을 가진 달기로프(와이어로프 또는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결속하고 로프는 크레인 훅에 정확히 걸어 인양토록 함.

나.중량물 취급계획 수립 및 이행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는 사전에 중량물 형상, 무게, 취급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양방법 등 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시시켜 올바른 작업방법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작업 지휘자 배치

안전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위험구역내에 작업자 통행이 없도록 관리 철저.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월 ○일 12:40분경 강원도 화천군 소재 ○○(주)다목적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다목적실 옹벽 및 보콘크리트타설 중파이프 써포트 2단구조의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콘크리트 보조인부 2명이 거푸집 및 철근등에 충돌하여 1명 사망,1명부상을 입은 재해임.



- 가. 거푸집 동바리 표준조립도 미작성
- 나.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미흡
- 다. 콘크리트 타설시 편하중 발생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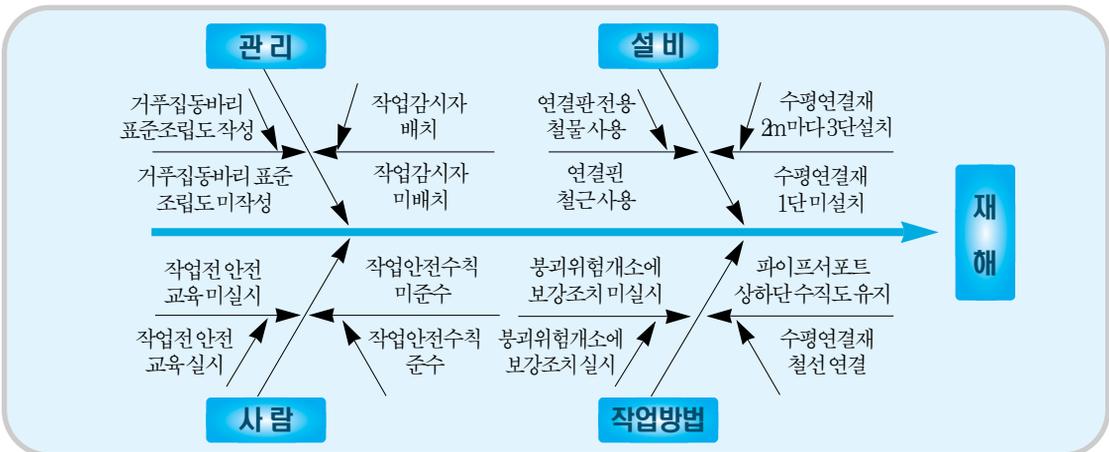
가. 거푸집 동바리 표준조립도 작성
거푸집 동바리 설치시에는 하중관계 검토를 통한 안전한 구조의 동바리 방법을 결정하고 부재, 치수 등이 명시된 표준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의해 동바리를 조립토록 함.

나.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철저
-수평연결재 2m마다 설치 후 전용철골등으로 결속,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
-파이프 써포트 상하단(2단) 수직도 유지.
-연결된 전용철물 사용.

다.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요령 수립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 타설속도, 온도, 슬럼프, 다짐방법 등에 의한 측압 발생으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작업요령을 수립 및 준수 철저.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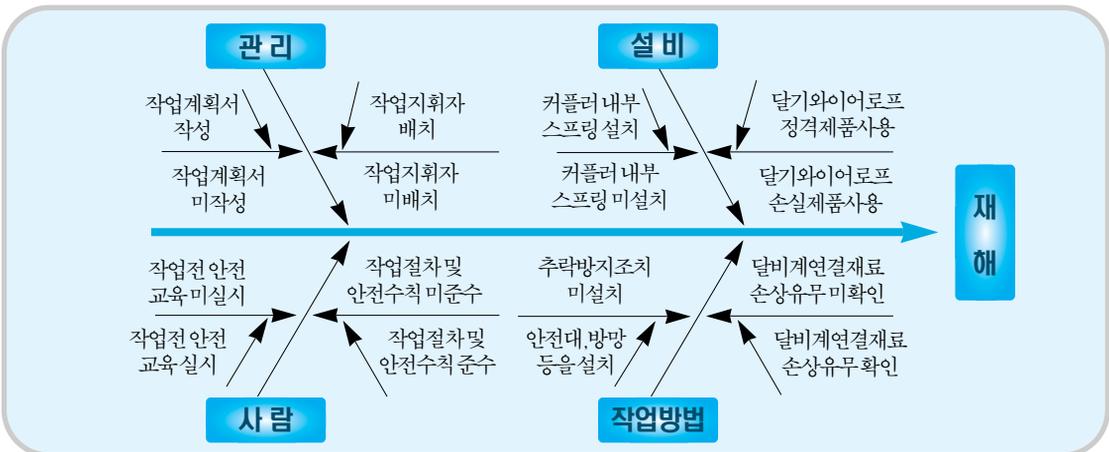
2003년 1월 〇일 10:05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〇건설(주) 체조경기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천장하부에 설치된 점검통로 지지용 케이블 고정앵커부품 작업 중 케이블이 이탈되면서 점검통로 연결부의 탈락, 달비계를 매달고 있는 슬링벨트 4개중 2개가 끊어져 작업자 4명이 12m 바다으로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작업절차미준수
- 나.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다.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작업전 검토,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및 준수 철저.

나.추락방지조치 철저

-2m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거나,
-추락위험 위치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한 후 작업토록 함.

다.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고소작업전 케이블 연결상태, 슬링벨트 등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 실시.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